

대 회 규 정

제 1 조 경기규칙

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농구연맹(FIBA) 및 대한민국농구협회(KBA) 경기규칙 을 적용한다.

제 2 조 참가자격

당해년도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팀

제 3 조 경기방식 (참가신청 접수 후 확정)

1. 초 등 부 :
2. 중 학 부 :
3. 고 등 부 :
4. 대학부 :
5. 여자일반부 :
6. 3x3(남자일반부) :

제 4 조 공 인 구

대한민국농구협회 공인구(MOLTEN) 로 한다.

제 5 조 경 기 장

1. 양팀의 벤치위치는 경기기록석 좌측은 A석(대진표 첫 자리), 우측은 B석 으로 한다.
2. A석은 연한색, B석은 진한색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.
(단, 양팀의 색상이 동일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이 예상 될 때에는 주심이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을 명할 수 있다.)
3. 벤치에는 등록된 선수 및 임원 이외의 착석을 불허한다.
4. 선수명단은 매 경기마다 규정에 의한 12명의 선수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6 조 선 수 및 임 원

1. 선수 및 임원은 당해년도 대한민국농구협회 등록을 필한자로서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.
2. 대회 중 임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규 등록을 필하여 야만 그 자격을 인정한다.

제 7 조 제 재

대회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 차기년도 본 대회에 출전자격을 불허하며, 대회 중 정당한 사유(천재지변 등) 없이 출전하지 않아 두 번의 경기를 몰수당한 팀은(몰수패) 해당대회 최하위가 되며 잔여경기의 출전자격을 상실한다. 또한 해당 팀은 당해경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변상해야 한다.

1. 몰수패 적용 규칙

- (1) 경기시작 시간 15분이 경과하도록 팀이 경기장에 나오지 않았거나, 5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경기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
- (2) 경기가 진행되려는 것을 행동으로 방해할 때
- (3) 주심이 경기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거부할 때

▣ 벌칙(PENALTY)

- (1) 경기는 상대팀이 승리한 것으로 하고, 스코어는 20:0으로 하며, 또한 몰수패를 당한 팀은 순위결정점수를 0점으로 한다.
- (2) 두 번째로 경기를 몰수당하는 팀은 해당대회에서 실격되며, 그 팀의 당해 대회 실적을 모두 무효로 한다.

2. 자격상실패 적용 규칙

경기 중 한 팀의 선수가 경기장에 1명이 남게 되면, 그 팀은 자격상실로 경기에 패한다.

▣ 벌칙(PENALTY)

만일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팀이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 득점이 많으면 스코어는 그대로 기록하고, 득점이 적을 때에는 스코어를 2:0으로 기록한다. 그리고 자격상실로 패한 팀의 순위 결정점수는 1점으로 한다.

3. 대회 중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엄중 조치한다.

제 8 조 소청위원회 또는 경기·심판위원회

1.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하여 소청위원회 또는 경기·심판위원회를 둔다.
2. 소청의 절차 및 처리는 아래와 같다.

(소청의 절차)

1. 팀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해 팀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가. 심판들에 의해 정정되지 않은, 기록원들의 점수 기록, 시간, 혹은 샷 클락 운영의 오류
나. 몰수패 처리를 하거나 경기를 취소, 연기하거나, 경기를 시작하지 않기로 한 결정
다. 적용되는 자격에 대한 규칙 위반
2. 소청이 인정되기 위해서 제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.
 -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해당 팀의 주장이 Crew chief(주심)에게 그의 팀이 경기결과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고, 주장은 스코어시트 'Captain's signature in case of protest' 칸에 서명을 해야 한다.
 - 경기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제소의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.
 - 각 소에 대해 100만원의 비용을 대회본부에 예치해야 하고, 제소가 기각될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되지 아니한다.
3. 주심은 제소 이유를 받아서 대한민국농구협회 및 경기.심판위원회에 원인이 된 상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.
4. 이를 받은 경기.심판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,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. 경기.심판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이용해야하고, 부분 혹은 전체 경기의 재확인 등을 포함해 제한없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. 경기.심판위원회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오류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없이 경기결과를 바꿀 수 없다. 새로운 결과는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.
5. 경기.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경기 중에 나오는 판정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며, 더 이상 검토나 항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예외적으로 자격에 대한 결정은 적용되는 규정을 고려하여 다시 호소할 수 있다.

제 9 조 기 타

1. 대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한민국농구협회 사무처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2. 대회기간 중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만이 이를 처리할 수 있다.
3. 참가신청 팀이 4팀 이상일 경우에만 부별 경기를 진행한다.
4.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회참가 신청 시 참가 신청한 선수 모두 "학교폭력처분이력부존재서약서" 제출해야 한다.

【시 상 내 역】

1. 단체상 : 각 종별 1, 2, 3위
 2. 개인상 : 각 종별 최우수선수상, 우수선수상, 미기상, 감투상, 지도상(각1명)
- ※3x3(남자일반부): 단체상 시상(1,2,3위)